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87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권영진・복기왕・배준영 엄태영・김석기・임종득 우재준・이종욱・김소희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

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교육 등) ①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교육(이하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기인증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의 내용·방법·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및 제6항”을 “및 제6항, 제32조의3”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

제84조제4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32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교육 등) ①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교육(이하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기인증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에 소요되

	는 인력과 예산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의 내용·방법·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 ------------------------------ ------------------------------ ------------------------------ ------------------------------ ------------------------------ ------------------------------ ------------------------------ ------------------------------ ------------------------------ ------------------------------ ------------------------------ ------------------------------ ---------------및 제6항, 제32조의3----------------------

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	------------------------------------. ------------------------------------

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 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 ------------------------------ ------------------------------ ------------------------------ ------------------------------ ------------------------------ --.
第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第72조(보고ㆍ검사) ①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
5의2. (생　략)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8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第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 략) <신 설> 15. ~ 24. (생 략) ⑤ · ⑥ (생 략)	④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32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 2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